

레드디어 한글학교 교직원 근무규정

제 1조 교사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며 교실 수업, 노래, 무용, 체육, 예절 등의 실기 지도, 그리고 행사, 여행중에 학생을 돌보는 것도 포함된다.

제 2조 직원

직원은 교무에 관여하지 않고 사무, 용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

현재 레드디어 한글학교 직원은 총무가 이사회, 교무회의 행정, 교육관련 업무를 관리하며 필요성이 생기면 직원을 확대하고 세부규정도 첨부하기로 함

제 3조 교사의 자격

1. 교사는 초급대학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 내지는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교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며 현지 교육체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3. 교사는 자격이 부족하여도 학교 교사로서 봉사하고자 함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특별 임용될 수 있다.

제 4조 교사의 종류

1. 교사에는 정교사, 부교사, 임시교사, 보조교사가 있다.
2. 정교사는 최소 한 반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FULL TIME교사다
3. 부교사는 정교사의 부재 시 또는 다음 정교사로써 수련을 위한 PART TIME 교사로 학기 당 정교사의 반정도를 최대 정원으로 한다.
부교사는 한글수업 외 과외수업이나 업무를 책임 질 수도 있다.
4. 임시교사는 필요에 의해서 초빙되는 특별교사이다.
5. 보조교사는 주로 볼론티어 학생중심으로 수업을 보조하는 교사다.

제 5조 교사의 임기

1. 정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나 연임할 수 있다.(임명된 1년의 임기는 의무적으로 준수한다)
2. 임시특별교사는 교장이 초빙하나 그 기간은 최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교사는 임기는 없으나 학기 중 반 이상을 참가하면 원하면 다음 학기 우선 정교사자격을 갖는다.
4. 보조교사는 가능하면 한 학기를 봉사해야 하나 특별한 임기는 없다.

제 6조 교사의 임용과 해임

1. 임시특별교사는 교장이 필요 시 수시로 초빙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기간을 통보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용이 소멸된다.
2. 부교사는 학기 중에도 필요하면 교장의 결정으로 임시로 반을 담당하고 운영할 수 있다.
3. 보조교사는 지원자를 중심으로 각반 1명정도 교감이 임명한다.
만일 보조교사가 요구하면 볼론티어에 대한 Certification을 발행 해준다.
4. 정교사는 교장, 교감의 면접 후 교장에 의해 임시 임용이 된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결에 의해 최종 임용되고 임용장을 수여 결정된다.
5. 정교사의 해임은 이사장, 교장, 교사 3인이상의 요구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2/3의 의결에 따른다.
6. 부교사, 보조교사는 교장, 교감의 합의로 수시로 해임 할 수있다.
7. 교사는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임용추천이 있기 전에는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제 7조 정교사

1. 정교사는 담임한 반 교실의 실질적 책임자이며 교무회원으로 교감이 될 자격을 갖는다.
2. 가능하면 학기 중 부재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부재하면 교감과 상의 부교사로 대체해야 한다.
3. 통보없이 1달이상 부재 시 자동 정교사직은 해임되며 교감이 후임을 임명한다.

제 8 조 교감

1. 교감은 정교사 중에서 교장의 추천 또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무회에서 결정한다.
교무회는 교장,교감,정교사로 구성되며 과반이 찬성하면 이사회가 임명한다.
2. 교육의 실질적 책임자로 커리큘럼,교사,일정등을 관리하며 행정이나 외부일엔 관여치 않는다.
3. 커리큘럼은 교감의 주도하에 교무회에서 결정이 되며 이사회요구 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별도 요구가 없으면 교무회 승인으로 완료
4. 교감의 임기는 2년 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교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부교사,보조교사를 임명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승인 하에 비용의 사용을 결정하고 집행 할 수 있다.(\$200이하는 승인 불필요)
7.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부재 시 교장 권한을 대행한다.

제 9 조 교장

1.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육, 행정 양면에 걸쳐 책임을 진다.
 2. 당연직으로 이사회원이 되어 행정에도 관여한다.
 3. 교장은 교사들을 지휘, 감독, 평가 한다.
 4. 교장은 이사회에서 지시된 사항을 집행한다.
 5. 교장의 임명은 이사회추천으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
 6. 학교운영을 위한 비용사용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으며 이사회 총무와 같이 학교 수표에 Co-sign 할 권한을 갖는다.
 7. 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 교장과 교감은 임기중이라도 현격한 결격행위로 학교에 지대한 악영향을 우려 이사회이 요구해 이사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2/3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다.
 - 해임과 동시에 권한과 책임은 정지되며 교장은 교감이 유임하고 교감은 교무회를 통해 정교사 중 즉시 선출 유임한다.
 - 교무회원이 사정으로 임기 중 사임하게 되면 즉시 이사회를 소집 후임자를 임명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10조 혜택

- 1.등록비 면제 - 정교사와 교감의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비를 면제한다
부교사 중 Activity를 담당하며 Full time봉사하면 등록비를 면제한다.
2. 보너스 - 정교사,부교사,보조교사를 분류해 차등 지급한다.
3. 급여 - 향후 단계적으로 교감,총무를 우선 유급으로 하고 다음 단계로 정교사까지 유급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재정의 목표로 삼는다.
4. 가능하면 규정대로 적용하나, 재정을 고려한 이사회에 결정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 11 조 규정의 개정 및 경과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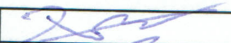



- 본 규정의 개정은 전이사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의결,인준한다.
또한 본 규정은 인준시 즉시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이사회 1 명이상 발의로 과반수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최소1년은 적용하며 개정은 1년 단위로 한다.

- 임명 확정된 직책자는 한글학교 이사장명의 임명장을 학기시작 전 수여한다.
- 현재 총무는 정관에서 이사회 소속으로 하고 관리규정을 두었으며 행정,외교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직원이 필요 시 규정과 직함을 이사회에서 만들어 보완 개정한다.
- 교사, 직원관련 규정이 정관에 규정된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은 이 규정이 우선순위로 적용된다.

2016년 7월 3일

이사 Sign

엄기준		김형수	
김택중		이상범	
문상준			

위의 사항 문상준 임명권 다름다 이사장명의로 이사장명 (3부: 대외부)